

『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[별표1]의 “부설주차장 설치기준”에 의거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의 형평성에 맞게 구미시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 [별표2] “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”을 현실에 맞게 『시설면적 150㎡당 1대를 120㎡당 1대로 하되 다만,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.7대를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.』로 강화하는 내용임

4. 참고사항

-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[별표1]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,
-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하여 세대수가 많고 차량 또한 많으므로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재의 150㎡당 1대를 개정안의 120㎡당 1대와 단서조건대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